[연구&전문기관용] 연구자비자 발급 신속심사 안내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이취경 사무관/이재인 주무관, 02-2110-4067/4068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구서희 사무관, 044-202-4833

1 연구자 비자 발급 신속심사 개요 ······························ 1
2 신속심사 절차 상세 설명 ·· 2

1 연구자 비자 발급 신속심사 개요

○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자**를 **초청**시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개발 활동 위축**을 **방지**

○ **신청 기관** : 비자 발급 문제*로 국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외국인 연구자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연구기관(정출연·국공립연·대학 등)

* **(대표적 비자발급 문제)** ① 코로나19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억제**되고 있는 **국가**의 연구자 초청, ② 항공편 취소 등 예상치못한 사유로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③ 비자 발급에 2주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신속심사 신청 대상자** :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연구자 및 그 **동반가족(F-3)** ※ 초청연구자 동포(F-4)인 경우에도 가능

○ 신속심사 절차

대상기관 유형			신속심사 요청 공문발송 주체		법무부 (체류과)		재외공관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출연법에 따른 기관)		해당 연구기관 소관 **중앙부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해수부, 국방부 등)	⇒	·재외공관에 해당자의 **신속비자 발급 요청**	⇒	·요청자에 대해 **신속심사 추진** ·건강상태 등 대면심사 후 **비자발급 여부 결정**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대학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해당 연구과제 소관 **중앙부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산업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소관 **중앙부처*** (총괄:산업부)				

* 산업계의 경우, 기존 기업유형별 신속심사 요청과 동일한 소관부처에서 운영

[산업계 신속심사·자가격리면제서 요청 체계 : 각 부처 담당자 연락처 [참고2] 참조]
산업부(주요 제조업·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기초), 교육부(산학협력)

2 신속심사 절차 상세 설명

① 연구기관에서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양식 제출
②&③ 소관부처에서 법무부에 요청공문 발송 및 발송된 요청공문을 연구기관에 송부
④ 연구기관에서 소관부처로부터 송부받은 요청공문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달
⑤ 해외 연구자가 재외공관에 요청공문과 함께 비자발급 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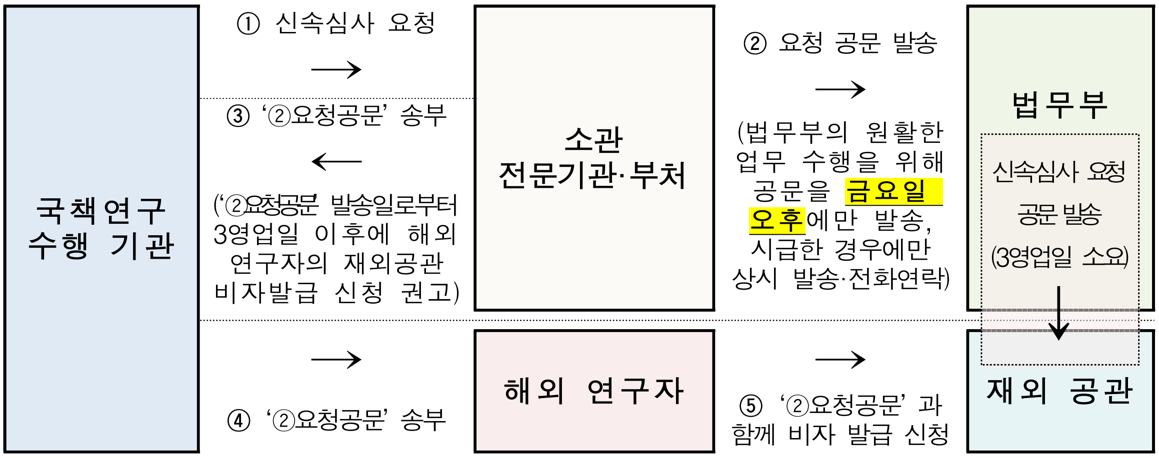

① 연구기관에서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신청양식 제출**

※ 신청양식 : 별도 엑셀파일 '(신청양식)사증 신속심사 대상자 명단' 첨부

1) **출연연·국공립연**의 경우, **소관 부처**에 메일 등으로 제출

※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 해당 기관 담당부서(담당자)에 제출

2) **대학**의 경우, 해외 연구자가 참여할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부처 담당부서**에 메일 등으로 제출

※ **과기정통부 소관 국책연구개발사업** : 해당 국책연구개발 과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전문기관 담당자는 신청자가 국책연구개발 과제 수행자가 맞다면, 신청양식의 초청연구자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증종류 등) 및 신청 영사관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구두확인 후 과기정통부 해당 국책연구개발사업 담당자에게 **금요일 오전** 중 취합하여 송부

② 소관부처에서 법무부로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 **요청 공문 송부**

※ 필히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부처에서 발송(연구기관 직접발송 불가)

※ 과기정통부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 및 연구과제 담당 부서에서 공문 발송

※ 매우 시급한 경우, 소관부처에서 금요일 외 송부 및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8)로 전화

[과기정통부 운영 예시]

대상기관 유형		신속심사 수요 취합 후 매주 금요일 오전 중 소관 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긴급건 발생시 수시 요청 ⇒	과기정통부 신속심사 요청 공문발송 주체	매주 금요일 오후, 신속심사 요청공문 발송 ※긴급건 발생시 수시 요청 ⇒	법무부 (체류과)
국책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IBS, 4대 과기원 등 ※ 필요시 과기정통부 소관 부서가 연구기관 유형별 신속심사 수요 취합기관 지정 (예시) 출연연→NST에서 취합, 과기원→KAIST에서 취합 등)		해당 연구기관 소관 부서		·재외공관에 해당자의 **신속비자 발급 요청**
대학 (국책연구 과제 수행)	· 개인기초연구, 국제연구 인력교류사업 등 ※ 각 국책연구사업 **전문기관 담당자**가 취합		해당 연구사업 소관 부서		
산업계	· IT 및 기초	※ 산업계 수요는 기존방식으로 운영	정보통신산업 정책과	※ 산업계 수요는 기존방식으로 운영	

※ 과기정통부는 각 연구기관·과제 담당부서에서 취합 후 법무부로 주1회 공문 발송

○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 NST 소관인 경우 NST에서 취합 후 과기정통부 소관부서로 금요일 오전 중 요청 등 각 부서에서 적합한 형태로 접수

○ **국책연구과제 수행 중인 대학** : 전문기관에서 취합 후 금요일 오전 중 과기정통부 소관부서로 요청

③ 부처·전문기관으로부터 부처가 법무부에 발송한 **요청공문**을 메일 등으로 **수령**

④ 상기 ③에서 받은 **요청공문**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달**

- 해외 연구자가 재외공관에 해당 공문을 제출할 때에 재외공관에서 공문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꼭 **공문번호**가 보이는지 전달 전 확인

- 소관부처에서 법무부로 요청공문을 보낸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해외 연구자가 **재외공관으로 공문**과 **비자 신청 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 이미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하나, 재외공관의 업무 과부하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재외공관에 공문과 함께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비자 재발급 신청**인 경우에도 해당 절차와 동일하게 신속심사 요청 후 재외공관에 필요서류와 공문을 제출

※ 재발급인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 외에 **필요 서류**는 각 **재외공관으로 문의**

참고1 비자 신속심사 요청 양식 (예시)

연번	입국자 국적	입국자 소속	입국자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증종류	초청기관	초청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신청 영사관 (정확히 기재 필요)	신청 사유	사증 신속 발급
1	싱가포르	University of SAMPLE	KIM SAMPLE	68.1.1	A1234567	E-1	한국과학기술원	김견본	010-111-1111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국책연구개시	법무부
2	미국	University of SAMPLE2	Mary SAMPLE	88.1.1	B1234567	E-3	한국화학연구원	이견본	010-222-2222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책연구개시	법무부

※ 실제 요청 양식은 엑셀파일로 별도 첨부('(신청양식)사증 신속심사 대상자 명단')

※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영사관** : 해외 연구자가 실제 비자발급 심사를 받을 재외공관
(법무부에서 해당 공관으로 공문을 송부하므로, 정확히 작성 필수)

· **연구자 인적정보**(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증종류) 다회 검토 필수

참고2 산업계 비자 발급 신속심사 관련 부처별 담당과 현황

소속	부서	연락처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2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8
문화부	비상안전 기획관실	044-203-2290
농림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식품)	044-201-2116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32
해양수산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4-200-6107
해양수산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4-200-6108
금융위	비상금융과	02-2100-1653
중기부	국제협력과	042-481-8903
중기부	국제협력과	042-481-1626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14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313